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인쇄/1998년 12월 25일
발행/1998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교류협력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4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58-3 3,500원

연구보고서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 규 륜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한은 유선 및 무선분야의 통신발전에 있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반면, 북한의 통신은 기본적 전화수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낙후된 상황에 있다. 통신분야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의 증대추세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한간 통신소통이 거의 단절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이전에 남한과 북한이 통신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과 북한의 낙후된 통신시설을 개량하여 남북한간 통신협력을 추진하는 방안 및 북한내의 통신발전에 남한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 북한의 통신현황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신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주민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이라 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통신 및 방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전신, 전화, 우편, 방송 등 여러 가지 통신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통신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으로 분류되며, 정무원의 체신부(개정헌법에 따르면 내각의 체신성)를 비롯하여,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통신이 당 및 국가경제지도 기관들의 지도와 지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하는 대중교양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신은 당과 정부에 의한 일방향, 체

제유지 및 주민통제 위주의 행정지침, 지령, 사상교육 등의 수단과 남한에 대하여 반한, 반미의 선전·선동의 기능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통신정책은 40년대의 개조단계, 50년대의 복구단계, 60년대의 정착단계, 70년대의 근대화·국제화 시도단계를 거쳐 현대화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지역의 통신망은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공중전기통신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방후 분단되면서 재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국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군→리로 연결된 중앙집중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평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전화는 3-4만회선에 불과하며, 한 읍에 전화가 1-2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통신의 지휘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전신전화의 자동화와 능력확장 등 통신부문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망은 현재까지는 주로 유선전화망을 구축하고 그 일부를 광통신망으로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통신수단의 전반적인 상황 못지 않게 남북한간의 통신망의 연결정도도 남북한간의 통신분야 교류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남북대화용, 대북 경수로 사업용, 항공관제용 등 3개의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중 항공관제용 통신망은 판문점을 경유하는 최초의 상용 통신망으로써 향후 남북간 통신교류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주)온세통신이 금강산 현지와 남한과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통일이전 동·서독간 통신교류 사례

독일통일은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 사건이라기 보다는 끊임없는 교류·협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독간의 통신분야 교류·협력도 예외는 아니다. 동서독간의 통신분야 교류협력은 1972년에 동서독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의 통신체계는 서독에서는 독일연방우정성(Deutsche Bundespost: DBP), 그리고 동독에서는 독일우정성(Deutsche Post: DP)에 의하여 각기 발전하였다. 양독간 통신은 단절되지는 않았으나, 수동식 전화회선으로 통화가 실시되고, 동독이 동·서베를린간의 지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기본조약 합의 이전의 양독간 통신교류와 관련된 협상은 1966년에 동독이 서독의 우정성과 서베를린 당국에 대하여 동독이 더 많이 제공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와 연체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데서 출발한다. 동서독의 우정성 대표단은 1970년 4월 29일 서독의 본에서 회합을 갖고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간의 우편 및 통신교류에서 발생한 비용의 청구 및 청산에 관한 합의사항」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1년 9월 30일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우정성 대표단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우정성 대표단간의 협상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어 동서독간의 통신교류가 다소 개선되었다.

양독간 통신분야 교류는 기본조약의 타결로 큰 전기를 맞게 되었는 바, 1972년 양독간에 맺어진 기본조약 중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구체적 실천 및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야별 협력 증진"을 명시한 제7조의 정신 및 추가의정서 제5항에 따라 양독 우정성은 계속

적 협상을 통하여 1976년 3월 30일 「우편 및 통신분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 조약」을 체결하였다. 양독간 통일이전 통신분야의 교류·협력은 동독과 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활성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양독간 통신이 동서독 주민간 이질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독간 통신은 2차대전 종전이후 기본조약 체결시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남·북한 경우와 달리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서독과 동독간 통신은 통신교류를 제한하려 한 동독의 정책에 의하여 분단 초기에는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독이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통신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이전 통신분야 교류·협력과정이 남북한 통신교류·협력의 방향성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은 통신소통의 재개라는 통신교류와 북한지역 통신시설의 현대화라는 통신협력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간 통신교류의 재개를 위하여는 남한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북한측에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남북한간 통신교류를 확대함에 있어 북한측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지역의 통신시설 현대화작업에 남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남한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이전의 남북한간 통신교류는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통신수요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통신수요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남북한간 통신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998~99년을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기로, 2000-2001년 기간은 교류·협력 활성화기로 설정하였으며, 2002년경에는 교류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남북한 통신교류·협력 활성화방안은 통신소통 루트의 재개 및 확산이라는 통신교류와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남한이 참여하는 통신협력에 대한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남북한 통신교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통신루트를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 통신협력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하지만, 통일이전에도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에 대한 통신장비의 공여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되, 특정지역의 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에는 공기업이 추진주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화해·협력기의 남북한간 통신분야 교류·협력은 남북 통신교류의 접촉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전용회선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기업의 경협사안별 부대사업으로서의 통신교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류·협력 활성화기에는 남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전용회선이 안정화된다는 가정 하에 통신이용자 집단을 남북교역 관련기업

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 단체로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 통신협력의 추진은 북한지역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남한이 자본·설비·기술면에서 참여하는 것과 남북한간을 연결하는 기간전송로를 건설하는 것 및 남한의 고도화된 기술을 북한 기술진을 교육함으로써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셋째, 교류·협력 활성화기의 후반부에는 남북한간 통신소통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남북한간에 통신망을 연결하고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통신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통신협정의 체결에 따라 통신망이 연결되고 남북한간 통신이 자유롭게 소통되게 되면, 남북통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통신수요에 대비하여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망의 확충과 개선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계획으로 북한지역의 통신망을 남한지역의 통신망 수준으로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기간에는 남북한의 통신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통신시설이 남한의 통신시설과 상호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의 파급효과

북한은 주민통제의 목적으로 통신정책을 수행하여 온 결과 북한 주민간 통신은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내 통신은 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남한과의 통신교류 재개문제에 대하여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이 통신소통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을 경우에는 남북한 통신교류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통신교류의 초기에는 통신교류의 확대가 남북한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따라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통신교류·협력의 확대가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제한적이나마 경제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과의 통신교류·협력 확대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통신인프라를 개선해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남한과 북한간의 통신분야 협력사업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우선 전화기의 조립생산 등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남한의 교환기를 북한에 설치하여 북한내 통신소통을 발전시키는 것 등이 있다. 셋째,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의 증대는 북한측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게된다. 즉,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과 남한간 통신교류에서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향하는 통신의 양이 많을 것이므로,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 및 확대는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에 따르는 신변안전보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남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북한지역에 진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통신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인프라 현대화라는 측면과 함께, 통신협력사업 자체가 북한인력의 고용창출효과 및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이 북한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으로는 남북한간 통신교류를 확대함으로 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생활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통신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상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적 영향으로는 남북한간 통신교류 확대는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산가족간 통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개방과 연결되어 있어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남한이 북한과의 통신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조급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신중하고 꾸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분야의 교류·협력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서 남한내 통신사업자가 경제적 고려를 통해서 북한에 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서 론 1

Ⅱ. 북한의 통신현황 6
1. 통신정책 및 기구 6
가. 통신정책 6
나. 통신기구 9
2. 통신시설 현황 12
가. 통신의 발전과정 12
나. 통신망 구축 현황 14
3.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현황 21

Ⅲ. 통일이전 동·서독간 통신교류 사례 26
1. 기본조약 이전 통신교류 26
2. 기본조약 이후 통신교류 28
3. 남북한간 통신교류에 대한 시사점 33

Ⅳ.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37
1. 기본방향 37
2. 세부 추진방향 39
가. 화해·협력기 39
나. 교류·협력 활성화기 40
다. 교류·협력 제도화기 43

Ⅴ.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의 파급효과 46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46
2. 북한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48

Ⅵ. 결 론 51

참고문헌 53

- 표 목 차 -

<표 1> 미국의 대북 국제전화서비스 개요 19

<표 2> 북한의 통신시설 현황 20

<표 3> 통일 이전 동·서독 연결통신 현황 32

Ⅰ. 서 론

한국은 80년대부터 세계적인 정보화 추진의 물결에 따라 통신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첨단기법에 의한 무선통신망도 확충하여 세계적 수준의 통신망을 보유하게 되었다. 반면 북한에서는 기본적 통신수단인 전화의 보급마저 낙후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통신분야에서 현격한 발전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남한과 북한간에 통신소통을 추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간의 의사소통을 제한하여 체제에 대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며, 주민들의 여행의 자유도 제한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통신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큰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기업체간 또는 행정단위간 명령전달 및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통신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북한의 통신발전은 60~70년대의 외연적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져 공적인 목적의 전화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80~90년대에 추진된 세계적 통신발전의 추세에 북한은 경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동참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북한의 통신은 현재 매우 낙후된 실정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통신은 의식주문제와 함께 인간 본연의 삶을 유지하여 주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주민들간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사회라고 불려지

고 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혁명, 정보통신혁명, 정보폭발, 신지식인, 지식집약적 산업화 등의 용어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호출기, 무선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화 사회를 대변해 주는 수단들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정보화는 한 국가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직업구조, 가족구조, 가치관 등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정보화의 급격한 확대에 따르는 사회변화를 성찰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산업혁명기에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사회변화를 이끌어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정보사회로의 변화에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줄여 문자 그대로 지구촌을 구성해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일수록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신은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통신은 우편, 전화 등의 기본적인 연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신은 필연적으로 정보와 결합하여 있다. 즉,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통신의 역할이다. 따라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정보통신망의 확충은 모든 국가의 우선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신지식인을 육성하고 지식집약적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간 전

산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선진국의 정보통신은 멀티미디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들을 정보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삼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유선통신망 조차 불충분한 상황으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의 하나이다.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에서 한번 낙오하면 그 격차를 쉽사리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북한 통신의 발전을 위한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전통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통신이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수단으로도 필수적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신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 경제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통신은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질화된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통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각기 유지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이 경제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기반산업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분야의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증대추세로 미루어볼 때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통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통신을 발전시킬 때,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 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며,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제3국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남북한간의 통신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를 상정할

때 사전에 통신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간 통신소통이 거의 단절된 현 상황을 감안하여 통일이전에 남한과 북한이 통신교류를 재개하는 방안과 북한의 낙후된 통신시설을 개량하여 남한과 북한간 통신을 원활히 추진하는 방안 및 북한 내에서의 통신발전에 남한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적 의미의 통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칭하고 있으나, 북한의 통신산업이 미발달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화를 통한 통신소통을 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즉, 정보통신서비스는 정보통신체계의 제반요소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전산적 요소(computing power)가 투입됨으로써 단순한 음성전달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용도와 형태로 고도화된 정보의 소통수단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보통신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확대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의 다양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의 구조까지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기본적 의사소통 수단인 유선전화에 의한 통신루트도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남북한간의 통신교류·협력은 전화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전화를 통한 남북한간 통신은 전화서비스(phony services)를 유선통신(wired communications) 중심의 회선교환(circuit switching)에 의한 통신과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s)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남한과 북한간 통신의 경우에는 유선통신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분야도 살펴보는 것이 우선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북한의 통신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을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동독과 서독간 통일이전 통신교류·협력을 분석한다. 셋째, 동·서독간 통신교류·협력의 시사점과 남한과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의 발전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통신현황

1. 통신정책 및 기구

가. 통신정책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이 국가의 생산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통신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주민을 경제건설에 동원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이라 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통신 및 방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전신, 전화, 우편, 방송 등 여러 가지 통신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남한의 정보사회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들간의 통신도 극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통신부문의 발전도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북한의 통신 발전은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외화난과 기술력 낙후 등 일반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의 문제점 이외에도 통신을 체제통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정책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여 있다.

북한에서의 통신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으로 분류되며, 정무원의 체신부를 비롯하여,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1] 북한은 통신이 당 및 국가경제지도

기관들의 지도와 지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수행하는 대중교양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은 "자본주의하에서의 체신은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의 수중에서 인민대중에 의한 통치의 수단으로,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통신은 당과 정부에 의한 일방향, 체제유지 및 주민통제 위주의 행정지침, 지령, 사상교육 등의 수단과 남한에 대하여 반한, 반미 선전·선동의 기능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통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2)]

> 나라의 통신 및 방송 수요를 보장하는 인민경제부문, 체신은 운수와 함께 인민경제의 특수한 부분을 이룬다. 체신은 사회적 생산을 진행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며 전반적 생산과정을 다그치는데 더욱 중요하다.

또한 북한은 통신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다.[3)]

> 사회주의하에서 체신은 통신, 방송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이루어지는 련계를 신속정확히 지어주고 소식을 제때에 전달하여주는 나라의 신경이다. 체신은 중요하게 지휘통신과 산업통신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대한

---

1) 북한에서의 통신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하고 있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의 의미와 같은 북한에서의 용어는 체신이나, 본 연구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의 용어인 체신을 지양하고 통신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사회과학출판사 편,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 514.

3) "체신은 나라의 신경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2권」, p. 139, 위의 책, p. 514에서 재인용.

> 당과 국가의 경제 지도와 관리를 보장하며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 사이의 긴밀한 생산적련계를 맺어줌으로써 경제건설에 적극 복무한다. 체신은 또한 주민통신, 방송을 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에 직접 봉사한다. 체신은 특히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근로자들에게 신속정확히 전달침투하며 그 관철을 위한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지도를 기동적으로 보장한다. 체신은 현대전의 신경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통신(체신)은 경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보장하는 수단인 동시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 인민에게 전달·침투하며 관철시기는 보장수단이다. 또한 통신을 국방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할 것이다.

북한의 통신정책은 사회주의 형태의 조직으로서 국민들간의 통신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보다는 주요 자원을 행정조직의 구성체계에 맞춘 행정정보통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외전화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전화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협동농장, 공장 등에 설치된 산업전화로 공용통신을 이용하거나 각 체신소에 설치된 전화로 사적통신을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일반 가입자에 대한 전화보급은 매우 미미하며, 공중전화는 체신소, 백화점, 호텔 등에 일부 설치된 실정이다.

북한에서도 넓은 의미로 볼 때 통신의 매체 전달 및 구분 유형 등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통신 생산물의 필요성이나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과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공익성 위주보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부터 출발한다.

나. 통신기구

북한 권력체계는 노동당이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을 당 중앙위원회 통제하에 두고 당의 각종 감독부서를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에 배치해서 행정적 통제를 확보하고, 행정기관은 당의 방침을 전달하는 통로 또는 집행하는 수단으로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통신행정도 이와 같은 북한 권력체계의 당과 행정기구의 이중적 운용원리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체신부의 기구는 정무원 산하 38개 부서중의 하나이나, 체신부는 통신사업을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와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북한의 통신은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체신국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48년 9월 9일 북한은 정권수립과 동시에 체신국을 체신부로 승격하였고, 1963년에는 체신업무에 대한 지휘체제의 확립과 집중화를 위하여 모든 체신기구를 통합시켜 단일운영체계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1명의 상(장관급), 3명의 부상(차관급)을 위시하여 9개국 5개처 1개부 1개실로 조직되었다. 1972년 신헌법이 채택됨에 따라 종전의 내각이 정무원으로 개편되면서 행정통제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철도성과 해운 및 육운성을 통합하여 교통체신위로 단일화시켰고, 이와 동시에 체신성도 체신부로 개편하게 되었다. 따라서 체신부는 종래 내각이 가지고 있던 정책결정권을 중앙인민위원회로 넘기고 행정권만을 가지는 하위의 행정기관으로 격하되었다. 체신부의 기구는 7개 위원회 21개부를 9개 위원회 24개부로 증설했다가 12위원회 15개부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체신부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기구의 조직은 <도표 1>과 같다.

① 체신정책의 수립과 집행·지휘 감독실시
② 각종 우편물과 배포업무 관장
③ 전신전화 시설의 계획과 설비관리
④ 무선전파의 통제와 감시·감독
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신업무에 대한 대책수립과 협정체결 및 집행감독
⑥ 체신요원 양성과 확보에 관한 계획실시 및 지휘·감독
⑦ 체신분야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재 설비에 관한 계획과 분배
⑧ 전시체제하에서의 체신업무 관장
⑨ 성산하 전체기관의 영리업무에 관한 계획과 분배
⑩ 체신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실적보고와 총계작성 및 유지

<도표 1> 체신부 기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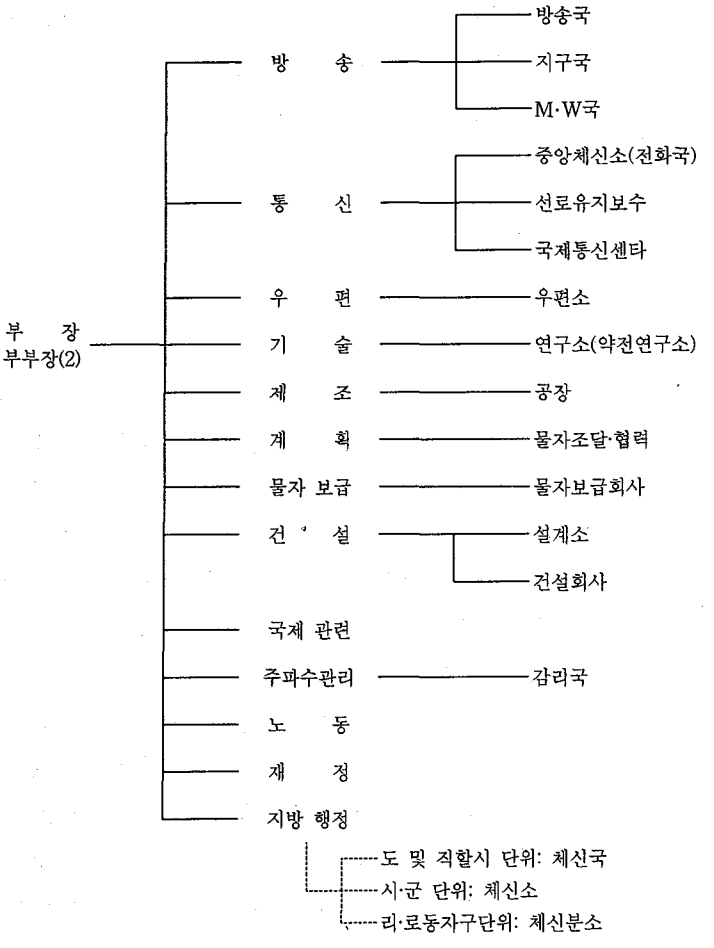

자료: UNDP, "Project for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88, 강인수·박성조·황인세, 「독일통신통합과 남북한의 통신통합」(서울: 통신개발연구원, 1991), p. 99에서 재인용.

1998년 9월 북한은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무원을 위상이 강화된 내각으로 교체하였다. 정무원은 단순한 행정집행기관이었으나, 개정된 북한헌법 117조에서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부, 부장, 부부장 등의 명칭은 성, 상, 부상 등으로 바뀌었다.

2. 통신시설 현황

가. 통신의 발전과정

북한의 통신정책은 1940년대의 개조단계, 1950년대의 복구단계, 1960년대의 정착단계, 1970년대의 근대화·국제화 시도단계를 거쳐 현재는 현대화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북한은 해방이후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개조단계(1946~50)에서, 1946년 2월 체신국을 창설하고 산하에 각 도 단위별로 통신국을 설치해 총 405개소의 우편국과 8개소의 통신공무국, 8개소의 중계국을 개설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통신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또 직속기관으로 평양, 청진과 원산에 3개 철도 우편국과 약간의 방송국이 설치되었다.[4] 이 기간 중 특기할 사항으로는 1946년 평양~원산, 평양~함흥 사이에 전화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전신·전화 통신망 확충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며, 1940년대 후반부터 소규모 전자통신공장 신설을 통한 전자공업 기반 구축에 착수하였다. 또한 1947년에는 통신기계제작소를 설립하여 1948년에 자석식 교환기, 전화기 등을 제작

4) 신효식, "북한의 통신 및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 13.

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전후 복구단계(1953~60)는 6·25전쟁 중 거의 파괴된 통신시설을 복구하는데 주력한 시기로서, 1954년에 평양과 각 도 사이, 시·군간의 전신전화망이 거의 복구되었다. 1957년에는 평양에 현대식 자동전화국과 신의주에 자동전화교환기를 설치하였다.[5] 이 시기의 공장 건설로는 1958년에 통신기계제작공장을 가동하였으며, 각 지방에는 리단위의 소규모 공장을 신설하였는데, 그 해 생산실적은 교환기 200대, 전화기 900대, 유선방송기 400대, 스피커 7,000대에 달하였다.

셋째, 정착단계인 1960년대에는 주민의 생활필수품 생산 촉구 및 지방산업 육성이 강조되어, 주민의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통신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따라 평양과 각 도간에 자동전화가 도입되었고 시외전화기에서 교환기의 표시기 등의 기술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1962년에는 남포통신기계공장에서 반송전화기 1만대 생산을 시작했으며, 1969년에는 박천통신기계공장이 건설되어 통신기계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근대화·국제화 시도단계인 1970년대에는 북한은 증가되는 통신수요의 충족과 방송출력의 강화, TV화 등에 주력하는 한편, 평양과 각 도 사이에 초단파 중계통신에 대한 다중화를 추진하여 주요 기업소들을 중앙과 직통으로 연결시키고, 군체신소들과 주요기관 내지는 기업소들의 구내통화를 자동화시켰다. 특히, 1973년 김일성의 새로운 산업전화 확장 지시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던 중계기 등 몇몇 통신기기를 자체 생산하여, 각 도간 총국과 경영국, 총국과 주요 산업기업체간의 산업전화망 확충이 이루어졌다. 한편 1982년에는 체신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통신과 방송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5) 위의 책, p. 13.

체신의 과학화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공업화전략이 점차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통신산업도 정체 또는 퇴보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통신정책이 공적인 행정수요 충족에 목적을 두어 왔기 때문에 사적인 통신부문은 더욱 낙후되었다.

다섯째, 북한은 1980년대 이후 통신의 자동화, 종합화, 기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3월 북한 노동당은 중앙위원 제6기 13차 본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6~1993)의 일환으로 낙후된 통신시설의 현대화 방침을 천명하고 1993년까지 전화회선수를 2백만회선으로 증대시키고 장거리 통신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6] 특히, 1989년의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 및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을 계기로 대내외적인 통신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 경제침체와 통신분야의 기반이 워낙 빈약하여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통신망 구축 현황

북한지역의 통신망은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공중전기통신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방후 분단이 되면서 재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외전화는 거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인민들은 협동농장, 공장 등에 설치된 산업전화로 공용통신을, 각 체신소에 설치된 전화로 개인전화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민들에 대한 전화보급은 매우 적고 공중전화는 최근에 체신소, 백화점, 호텔 등에 일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일반대중이 통신망에 광범위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공중전화는 평양과 함흥같은 대

6) 이명식, 「정보통신의 남북한 교류협력방안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1996), pp. 51-52.

도시의 주요거리, 백화점, 호텔 등에 일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에는 체신소에 2, 3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비밀로 취급되고 있고, 오직 몇몇의 회사만이 자사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7]

북한의 국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군→리로 연결된 중앙집중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평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전화는 3-4만회선에 불과하며, 한 읍에 전화가 1-2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통신시설은 과거 대부분 기계식 교환기였으나 최근 불란서 ALCATEL사의 중국 현지 합작공장(상하이 BELL사)에서 생산한 전전자 교환기를 도입하여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각도의 행정중심도시간은 전화 자동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최근 통신의 지휘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한다는 명목아래 전신전화의 자동화와 능력확장 등 통신부문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신부와 산하기관들에서는 단기간 내에 전신전화와 우편통신 및 방송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신전화의 기술장비를 새로 구비하고 전기통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시설공사를 해오고 있다.[8]

---

7) Chang-Ho Yoon and Young-Soo Lee, "Transform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North Korea",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ing Soci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9-10 November 1998, p. 131.

8) 「내외통신」 9162호, 1994년 10월 5일자, 이명식, 「정보통신의 남북한 교류

북한의 통신시설 발전상태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광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광케이블, 광전송장치 등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수백회선 용량의 통신망을 구성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경수로 사업지역의 경우도 평양~함흥~신포구간을 광통신으로 연결하고 있다.

북한은 광통신망의 사용상의 제한과 자본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광통신망을 확장하고, 이 통신망이 ISDN과 같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데 과감하게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1995년 9월 평양에서 함흥까지 300km의 광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최근 이 통신망은 나선지구로까지 연장되었다.[9]

북한의 국제통신망은 공산권과는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무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블라디보스톡간을 연결하는 유선망이 각각 구축되어 있다. 북한은 1981년 아시아태평양통신사기구(OANA: Organization of Asia-Pacific News Agencies)에 가입하였고, 1984년 INTERSPUTNIK(공산권통신위성기구)에 가입하여 FDM 22회선, SCPC 10회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1986년 프랑스와 기술제휴로 인도양상의 INTELSAT의 위성지구국을 평양에 설치하여 FDM 36회선과 SCPC 18회선을 연결·운용하여 서방 여러나라와의 위성통신 및 위성TV 중계가 가능해졌다.[10]

그후 1990년 11월 북한·일본간 직통 위성통신회선 및 국제전용회선 상호제공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전화 3회선, 텔렉스 10회선, 전보

협력방안연구」, pp. 50-51에서 재인용.

9) Chang-Ho Yoon and Young-Soo Lee, "Transform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North Korea", p. 130.

10) Ibid., p. 131.

1회선을 개통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마이크로파 회선능력 24회선, 테이블네트워크 15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 중국의 훈춘지역, 러시아의 포시에트 지역을 연결하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통신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전화회선은 나진·청진에 각각 2,000회선, 선봉에 1,000회선이 있으며, 국제전화는 평양에 있는 위성통신 지구국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북한당국은 연건평 10,000 평방미터 규모의 나진 국제통신센터 기초건설 공사를 1995년 4월에 완료하였고, 1995년 10월에 선봉지구에 4,800평방미터의 통신센터, 원정리에 1,500평방미터의 통신중계소가 완공되어 중국과의 국제 광통신망이 개통되었다고 발표하였다.[11] 또한 중국의 훈춘과 연결하기 위한 원정~나진 사이와 청진~나진간의 광케이블 공사가 1995년에 완공되어 평양을 통해 팩스, 텔렉스, 국제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다.

특히 나진~선봉지역의 통신망 건설사업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태국의 록슬리그룹(Roxley Pacific Company)과 BOT Base에 의해 동북아전신전화회사(NEATT)를 설립하여 1995년부터 27년간 독점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회사는 중국 길림의 훈춘과 나선지구를 연결하는 95km의 광통신망을 건설하였다. 록슬리그룹은 처음에 미화 5억달러 정도를 투자하여 40만 회선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선지구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 전화 5,000회선과 이동통신 500회선 및 80개의 공중전화를 가설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장기간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

11)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III) - '통신'", 「통일경제」, 1997. 8.

기 위해 새로운 합작 파트너를 찾고 있다. 북한은 또한 1998년 10월에 35개의 주요 시·군을 연결하는 광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이 통신망에 15개의 시·군이 연결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2]

북한은 특히 미국과의 제네바 기본합의문 타결에 따라 미국과의 국제통신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미국 AT&T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1995년 2월 미 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북한과의 통신재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FCC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95년 3월 미국과 북한간 통신서비스 제공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신청접수 결과 AT&T사와 IBD사가 국제전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AT&T사는 특별잠정인가(Special Temporary Authority)를 취득하여 1995년 4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AT&T사의 대북 국제전화 서비스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12) Chang-Ho Yoon and Young-Soo Lee, "Transform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North Korea", p. 130.

<표 1> 미국의 대북 국제전화서비스 개요

구 분	내 용	
이용가능지역	미국	먼저 뉴욕,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만을 제공하고, 그 밖의 주는 1995년 5월 1일부터 제공
	북한	전화교환수를 경유하는 통화는 전지역에 해당하고 자동전화는 평양만 가능함
요 금	1분당 4.96달러이며, 1분 추가당 4.25달러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콜랙트 콜, 북한의 전화번호 안내	

자료: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 보고서」, 1996.

북한은 1980년대부터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방 관공서 및 주요 기업소, 무역상사 등을 중심으로 텔렉스를 설치하였으며, 팩시밀리는 여러 개의 무역상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보급되고 있다.

북한의 통신시설 현황을 1993년에 북한이 국제통신연합(ITU)에 보고한 전화사용시설 자료를 통하여 남한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첫째, 전화시설수에서 북한은 약 130만, 남한은 약 2천만 가입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남한이 북한의 15.47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를 남북한의 총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 100인당 회선수로 비교해 보면, 북한의 경우 4.82, 남한의 경우 37.75를 기록하고 있어, 남한이 북한의 7.83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공중전화의 경우에는 북한은 2,720대, 남한은 28만 5천대로 남한이 북한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넷째, 이같은

공중전화 시설수를 인구 1,000인당 수치로 환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50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북한 통신의 낙후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통신을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불가결한 국제화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경제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표 2> 북한의 통신시설 현황*

항 목		단위	북한(A)	한국(B)	비교(B/A)
전화시설	시 설 수	K	1,307.2	20,223.1	15.47
	운 용 수	K	1,089.3	16,632.6	
	운 용 율	%	83	82.2	
	100인당 회선		4.82	37.75	7.83
	대 기 자 수	명	16,640	-	
공중전화	시 설 수	대	2,720	285,130	104.83
	1000인당시설	대	0.13	6.47	49.77
종 사 원 수		명	15,000	59,900	3.99
종사원 1인당 회선			72.6	277.7	3.83
통 신 수 입		백만$	0.58	6,898.3	
통 신 투 자		〃	3.0	4,429.5	
TV 수 신 기		천대	2,500	11,981	

* 1993년 기준
출처: 1995. 12. TTA 발행 세계의 정보통신지표와 1994. 9. DPRK Telecommunications Sector Appraisal(ITU Consultant)을 기준으로 재구성.

또한 전화의 보급상황을 주요 도시별로 살펴보면 100,000회선 이상이 설치된 도시는 평양, 함흥, 청진,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원산 등의 대도시에 불과하며, 장거리 전화 및 텔렉스도 이상의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 특히 전화 설치 상위 6개 도시인 평양, 청진, 강계, 함흥, 혜산, 신의주의 회선 수 총계가 849,700 회선으로 전체의 65% 이상이며, 평양의 전화 시설수가 전체의 17%를 넘고 있다. 이는 주요 통신의 도시 집중 특히 평양에 집중 현상이 심각하여, 시·군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통신 수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의 통신망은 현재까지는 주로 유선전화망을 구축하고 그 일부를 광통신망으로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선전화망 조차 수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들 간의 사적인 통신을 위한 기반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신망의 상황은 양적인 점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현황

북한의 통신수단의 전반적인 상황 못지 않게 남북한간의 통신망의 연결정도도 남북한간의 통신분야 교류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에서 항상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통신망의 연결상황은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전에는 남북한간의 통신교류가 전면적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근 45년간 남북한의 통신교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황에 있다. 현재는 사실상 남북한간에는 현재 남북대화용, 대북 경수로사업용, 항공관제용 등 3개의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1970년대의 남북대화 이전까지 남북한간의 합법적인 통신교류는 우편물 교환외에는 없었다.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열린 미·소공위 예비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한간의 우편물 교류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946년 3월 15일 오전 10시 38선 이남의 개성역에서 최초의 우편물 교환이 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미·소 공위의 합의의 효력은 사라졌으나, 남북한 간의 우편교류는 계속되어 1950년 6월 22일까지 총 16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남북한간의 우편물 교류는 1946년에 남행이 275,706, 북행이 872,587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1949년까지 교환된 우편물의 총수는 남행이 963,751통, 북행이 1,992,180통이었다.[13]

1970년대에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남북한의 통신망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그 성과는 크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연결된 통신망을 용도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남북대화용으로 연결된 통신망은 판문점을 경계로 남북한이 각각 설치하여 연결해 운용하고 있다. 남측에서는 판문점내까지 광케이블 및 대용량(8천회선 용량) 광단국 시설을 완료(BACK-UP용으로 디지틀 M·W 설치)하였다. 북측도 최근에 광케이블의 포설을 완료하였다. 이 통신망은 남북적십자사, 남북연락사무소 및 상설연락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남북한간에 직접 연결된 통신망은 총 28개 회선으로 이중 관제용을 제외한 26개선이 남북대화용이다. 남북적십자 중앙기관간 2회선, 남북회담용 통신망 18회선, 경제회담용 1회선 남북조절위원회간 1회선

13) 제성호, "남북우편·통신교류 현황과 관련법제 개선방안", 「교류협력국 법제도 세미나 자료」, 1997, p. 6-7.

이 있으며 판문점 남북적십자 상설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가 2회선,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가 2회선이나, 이중 현재 가동중인 회선은 5회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대북 경수로사업용 통신망 역시 남북한간에 연결된 중요한 통신수단이다. 이 통신망은 다음과 같은 루트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

<도표 2> 남북한 경수로 사업용 통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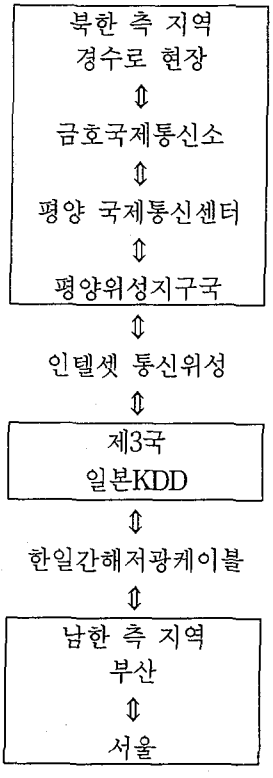

14) 위의 책, p. 14.

현재 가동중인 통신회선은 총 8회선으로 이는 공중용 4회선과 시공사 전용회선 4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신망은 지난 1997년 8월 4일에 개통되었으며, 북한내 경수로 현장으로만 통신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지역에서도 경수로 현장 근무자만이 한국내 제한된 가입자에게 전화연결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향후 1999년 8월부터는 경수로 지역에 독자 위성지구국을 건설하여 무궁화위성을 이용하는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남북한에 연결된 통신망 중 주목할 만한 것이 가장 최근에 연결된 항공관제용 통신망이다. 이는 북한이 비행정보구역을 개방함에 따라 남북한 항공관제소간을 연결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남북한 항공관제소간의 통화회선은 주회선과 예비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회선은 평양관제소에서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다시 대구관제소로 연결되어 있는 2회선으로 이는 1997년 11월 19일에 개통되었다. 예비회선은 평양관제소에서 위성통신 지구국을 거쳐 아시아셋위성으로 연결되고 이를 금산지구국을 거쳐 대구관제소로 연결하는 1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회선은 1998년 2월 17일에 개통되었다. 이 통신망은 현재 각국 항공기의 관제를 위해 시험운용중이며, 판문점을 경유하는 최초의 상용 통신망으로써 향후 남북간 통신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주)온세통신이 금강산 현지와 남한과의 통신서비스를 경수로 사업용 통신연결 방식과 유사하게 남북한간을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대그룹과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간에 체결된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금강산 관광지역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통신망을 확충하여,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통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정부는 1998년 11월 11일 현대전자, 한국통신, 온세통신에 의한 컨소시엄에 대하여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현재 이 통신망은 관광선을 포함한 금강산 관광지역에서 관광객, 금강산 관광개발 공사현장 근로자, 현지 금강산 관광사업 운영회사 업무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간 통신망은 현대전자와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구성되었고, 통신경로는 관광선에서 장전, 온정, 원산, 평양을 거쳐 인텔셋과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연결된다. 평양~원산간 및 원산~온정 간에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업은 현대전자, 한국통신, 온세통신 3자의 컨소시엄과 북측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시행되는 남북한 간의 최초의 통신협력사업으로 1단계 투자규모만 총 13만 달러에 이른다.[15] 현재로서는 금강산 관광지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한도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종료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금강산 관광 및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충분히 발전가능하며, 장차 남북통신협력이 활발해질 경우 하나의 기본모델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15) 통일부, "보도 참고자료,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http://www.unikorea.go.kr/kr/A14/A1487.htm, 1999. 1. 6.

Ⅲ. 통일이전 동·서독간 통신교류 사례

1. 기본조약 이전 통신교류

독일통일은 갑자기 일어난 돌발적 사건이라기 보다는 끊임없는 교류·협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독간의 통신분야 교류·협력도 예외는 아니다. 동서독간의 통신분야 교류협력은 1972년에 동서독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89년에 독일이 통일된 이후 통신분야 역시 통합의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동서독간의 통신분야 통합과정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관계의 수준에서 보건대 우리에게 보다 의미 있는 것은 1989년 독일통일 이후의 통신분야 통합과정보다는 그러한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서독간에 이루어져 온 교류·협력의 과정 특히 통신분야 교류·협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독일통일 이후의 통신분야 통합과정도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다루는 독립적인 연구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전의 동서독간의 통신분야 교류·협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의 통신체계는 서독에서는 독일연방 우정성(Deutsche Bundespost: DBP), 그리고 동독에서는 독일우정성(Deutsche Post: DP)에 의하여 각기 발전하였다. 양독간 통신은 단절되지는 않았으나, 수동식 전화회선으로 동서독간의 통화가 실시되어야만 했고, 1952년 5월에 동독이 동·서베를린간에 통용되어 오던 지선인 3,910회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하였기 때문에 동·서베를린 지역

간에는 직접통화가 불가능해진 바 있다. 따라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통화는 서독의 프랑크푸르트의 장거리 전화 교환소를 통해 동독의 라이프치히와 포츠담을 경유하여 동베를린에 연결되는 식으로 통화가 가능하였다[16].

기본조약 합의 이전의 양독간 통신교류 관련 협상은 1966년에 동독이 서독의 우정성과 서베를린 당국에 대하여 동독이 더 많이 제공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와 연체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데서 출발한다. 서독 우정성은 이에 대하여 국제원칙에 따른 청산 지불방식을 거절하고 초과부담금에 대한 정산 용의를 표명하였다.[17] 이에 따른 협상의 결과 서독은 1968년에 1967년도분의 차액 정산액 약 1,690만마르크, 1969년에 1968년도 6개월분의 차액 정산액 약 510만마르크를 동독 우정성에 지불하였다.

이를 계기로 1969년 9월에 동서독 우정성 대표들은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동서독의 우정성 대표단은 1970년 4월 29일 서독의 본에서 회합을 갖고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간의 우편 및 통신교류에서 발생한 비용의 청구 및 청산에 관한 합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게 되었다.[18]

양측은 우선적으로 최소한 지금까지의 범주내에서 국경선을 통과하는 우편 및 통신교류의 보증을 약속하였으며, 장거리 전화선과 텔렉스선의 추가설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1967년 1월 1일부터 상호수행한 업무성과에 대한 총액정산을 약속하였고, 동서독간의 우편 및 통신교류에 있어서 1960년 12월 31일까지 상호 수행한 업무성과에 대한 비용전액을 청산하기로 약속하였다.[19] 특히

16)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12, p. 511.
17) 위의 책, p. 498.
18) 통일원,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1993, pp. 131-133.

중요한 것은 1952년 동독측의 일방적 단절로 인해 중단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간의 장거리 전화업무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동독측이 구두로 표명한 점이다.

이 합의 이후 동독은 기존의 장거리 전화회선 34회선에 40회선을 증설하고 텔렉스 35회선에 32회선을 추가운영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약속을 이행하였지만, 1971년 6월부터 서독과 서베를린에 대한 우편·통신교류에 대해 국외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양독 통신교류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다.

동서독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1971년 9월 30일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우정성 대표단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우정성 대표단간의 협상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어 동서독간의 통신교류가 다소 개선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우정성이 1966년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초과 서비스분 경비 총액 5천만마르크를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우정성이 일시불로 청산한다. 둘째, 장거리 전화, 전보, 텔렉스 교류용 회선의 계속적인 증설 및 운영에 합의한다. 셋째, 전체 장거리전화와 통신교류의 단계적 자동화를 이행한다. 넷째, 주파수 사용의 조정을 실시한다. 다섯째, 새로운 통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합의한다.[20]

2. 기본조약 이후 통신교류

양독간 통신분야 교류는 기본조약의 타결로 큰 전기를 맞게 되었는 바, 1972년 양독간에 맺어진 기본조약 중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19)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12, p. 499.
20) 통일원,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1993, pp. 148-151.

구체적 실천 및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야별 협력 증진"을 명시한 제7조의 정신 및 추가의정서 제5항에 따라 양측은 우편·통신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21]

이와 같은 기본조약의 정신에 따라 양독 우정성은 계속적 협상을 통하여 1976년 3월 30일 「우편 및 통신분야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제1장은 이 협정의 법적 기초로서 이 협정이 다루는 대상을 기술하고, 통신업무에 적용할 협정으로서 동 협정과 부속 행정협정, 그 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정을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상호간의 우편교류에 관한 규정으로서 우편교류의 대상과 발송 규정의 상호합의, 요금책정과 부담대상, 우편교류에 있어서의 관세표와 관세설명서를 적용치 않는다는 점, 우편물의 국내법적 적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3장은 상호간의 장거리 통신에 관한 규정으로서 장거리 통신의 대상과 세부사항의 상호합의, 상호 요금통지, 장거리 통신에 대한 국제자문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4장은 우편 및 장거리 통신의 통과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3국으로의 통과 보장과 기술적·경제적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 서독과 서베를린과의 통신은 기존의 합의와 일치하되 가능한 간단하게 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5장은 주파수 이용의 조절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호간의 장애가 예상되고 양측의 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절하도록 하며, 조절절차에 관한 당국간의 합의를 명시하고 있다.

---

21) 통일원,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1993, pp. 201-202, 204-205.

제6장은 급부의 청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상호간의 우편 및 장거리 통신의 총괄적인 청산, 일방의 우편 및 통신을 타방을 위하여 제3국에게 중계한 경우 국제계약의 규정에 따른 청산 및 상호 합의,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통신을 위한 동독당국의 중계급부에 대한 청산방식의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7장은 책임과 요금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등기우편의 분실, 유가물 편지·통상소포·유가물소포 등의 파손 및 분실시에는 장거리 통신당국이 책임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대상, 배상의무, 요금반환, 파손 및 분실한 우편물에 대한 정보전달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22]

상기 우편·통신협정은 만국우편연합과 국제통신연합의 정관을 기준으로 하되 내독간 특수관계를 반영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측은 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국내 및 국제규정이 동시에 참작되었다. 즉, 동독은 국제규정을 적용했으며 서독은 국제규정적용을 거부함으로써 양국의 체신부는 상이한 요금책정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위 조약의 체결로 양독간 통신교류는 큰 폭으로 증대되는 동시에 매우 원활해졌다. 이에 따라 서독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초과 체신업무에 대해 동독 측에 연간 8천5백만마르크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동서독은 양독간 486개의 자동전화선 증설과 서베를린과 동독간 216회선 증설에 합의하였다.

그 후 동서독은 초과체신업무 지불정산에 대한 합의를 계속하여 서독이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연간 정산액을 2억마르크로 증액시키는 등 1983년 11월 15일에 양독간에는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

22) 위의 책, pp. 279-299.

다. 먼저, 편지, 소포 등의 우송시간을 단축시키며, 동독인 1인당 12건으로 제한되던 선물수취 건수제한을 철폐하여, 특히 약품우송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1984년 2월말까지 추가적으로 96개의 전화회선과 4개의 텔렉스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서독의 240개 지역에서 다이얼식의 직접중계로 통화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서독과 서베를린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통일이전 양독간 통신교류는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독간 전화통화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한 회선의 증설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양독간 전화회선수 증설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요약하면 1988년 기준으로 전화자동화율은 95%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총 1,529개 전화회선 가운데 서독에서 동독으로 연결한 회선은 1,314개인데 반하여 동독에서 서독으로는 215회선에 불과하였다. 또한 동독은 회선 증설 및 노후 회선 보수작업을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기피함으로써 회선수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내독간 전화통화 수요의 급증에 따라 통화 적체가 심화되었다.[23]

23)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12. p. 513.

<표 3> 통일 이전 동·서독 연결 통신현황

(단위: 회선)

연 도	전 화	전 보	텔 렉 스
1969년 이전	34	28	46
1970년	74	31	90
1971년	284	86	102
1972년	383	86	126
1973년	383	86	126
1974년	479	88	126
1975년	719	88	126
1976년	719	88	126
1977년	821	88	126
1978년	941	88	126
1979년	1061	88	126
1980년	1181	88	126
1981년	1301	88	126
1982년	1421	88	126
1983년	1421	88	130
1984년	1517	88	130
1985년	1517	88	130
1986년	1517	88	130
1987년	1529	88	130
1988년	1529	88	130

*출처: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pp. 512-513

3. 남북한간 통신교류에 대한 시사점

양독간 통일이전 통신분야의 교류·협력은 동독과 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 활성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양독간 통신이 동서독 주민간 이질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독간 통신은 2차대전 종전이후 기본조약 체결시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남·북한 경우와 달리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서독과 동독간 통신은 통신교류를 제한하려 한 동독의 정책에 의하여 분단 초기에는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독이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통신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통신교류의 확대도 현재 연결되어 있는 판문점 경유 통신망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독이 동독과의 통신교류를 확대하는데 있어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과 통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통신교류가 북한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독간 통신교류는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통신보다 서독에서 동독지역으로의 통신이 훨씬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독지역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동독정부의 통신제한정책으로 인하여 동독내 주민간 통신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통신교류가 확대될 경우에도 남한의 대북한 통신 수요가 북한의 대남한 통신 수요보다 클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동독은 서독에 대하여 양독간 통신교류 요금을 국제전화비용으로 책정하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남한의 대북한 통신수요가 북한의 대남한 수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통신교류비용을 보다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국제전화요금을 적용하려 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통일이전의 동서독간 통신교류·협력 사례의 시사점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 추진한 통신분야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교훈과 함께 남북한 통신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동독지역의 통신은 독일 통일당시 매우 낙후된 상황이었으므로, 서독은 통일독일에 초현대적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동독지역 통신역량의 증진과 동·서독 지역에 동등한 서비스 제공 및 통신조건을 창출한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제1단계인 1990~91년에는 주교환시설 및 거점교환시설의 장거리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제2단계(1992~93년)에는 지방도시에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하고 대도시에는 디지털 방식의 최종사용자 교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주교환시설 및 거점교환시설을 디지털화함과 동시에 무선통신망을 연결하며 광케이블을 확장 가설하였다. 제3단계(1994~97년)에는 지역망 구축과 ISDN의 도입을 개시하며, 재래의 모든 다이알식 교환시설은 자동병렬식 교환장치로 교체하였다. 제4단계(1998~2000년)에는 추가 계획사업인 협대역 ISDN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24]

---

24) 독일의 통신분야 통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강인수·박성조·황인세. 「독일통신통합과 남북한의 통신통합」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1991); 한국전산원. 「동독지역의 정보통신기반구축 사례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1995; Peter I. Wilde. 「통일독일의 통신통합」 (서울: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위와 같은 독일의 통일이전 통신분야 교류·협력과정이 남북한 통신교류·협력의 방향성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은 통신소통의 재개라는 통신교류와 북한지역 통신시설의 현대화라는 통신협력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간 통신교류의 재개를 위하여는 남한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북한측에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체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여 북한내 주민간 통신소통을 제한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남북한간 통신교류의 초기단계에서는 북한내 통신소통루트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남북한간 통신소통루트의 확대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남북한간 통신교류를 확대함에 있어 북한측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독은 통일이전 동독과의 통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지역의 통신시설 현대화작업에 남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남한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신체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남북한 통신통합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통신이 낙후되어 있으며 있을수록 남북한간 통신분야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은 통일이전에도 남북한간 통신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의 통신시설 현대화작업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도록

1998).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이전의 남북한간 통신교류는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통신수요가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통신수요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간 통신요금체계의 책정과 관련되므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초과통신에 대한 요금을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한과 북한간 모든 거래는 내국간 거래로 규정하였으므로, 남북한간 통신도 국내적 통신으로 간주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북한측에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동서독간 교류는 통신교류에만 한정되었으나 남북한간 교류는 반드시 정보통신의 교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발전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불가결하다. 특히 현대의 통신기술을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등 광범위한 정보통신기술과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물결이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 북한에서는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인 정보통신망과의 연결을 가급적 제한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Ⅳ.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남북한간 통신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이전에 추진하여야 할 남북한간 통신분야 교류·협력이 주안점이므로, 북한체제가 현 상태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25] 따라서 통신분야에서의 남북한간 통신분야 교류·협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점을 상정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8~99년을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남북 통신교류의 접촉점을 우선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북한이 원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99년에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이 안정화된다면 2000~2001년 기간은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분야에서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교류·협력 활성화기 이후에는 남북한간에

25) 통일대비 정부의 통신정책은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즉,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남북한이 각기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통신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한간 통신수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급변통일의 경우,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북한의 통신체제가 급격히 와해될 것인 바, 그 동안 북한은 통신을 주민통제수단 및 행정목적으로 운용하여 왔기 때문에, 어떻게 기존 통신체제를 민수용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붕괴로 인하여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지역의 위기관리가 시급한 현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치안 및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통신망 설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대비 통신통합에 관한 연구는 박철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참조.

통신분야에서도 당국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남북한간 통신분야 교류·협력의 추진은 화해·협력기, 교류·협력 활성화기, 교류·협력 제도화기로 나누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은 통신소통 루트의 재개 및 확산이라는 통신교류와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에 참여하는 통신협력에 대한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통신교류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통신루트를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판문점을 경유한 기존 통신루트를 활용하여 통신소통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경우와 같이 북한내 특정지역과의 통신소통 루트는 다변적으로 개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점진적으로 통신교류의 범위 및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남북한간 통신연결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남북 통신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남북한간 통신교류를 안정화시킨다.

둘째, 남북한 통신협력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지만, 통일이전에도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즉, 남한의 대북한 통신협력은 통일이후 남북한간 통신통합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통신이 남측 통신기술과 연동가능한 통신망으로 구축되고 또 이에 따르는 필요한 기술 전파를 위하여 통일이전에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통신은 통신설비의 특성상 선점기업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북한 통신 현대화사업을 외국사업자가 선점할 경우에는 시장 및 기술이 외국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 남한의 대북한 통신협력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통신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남한기업의 참여기회가 부여되었을 시, 장기적 안목에서 북한지역에 진출하도록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통신장비의 공여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자유화하되, 특정지역의 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에는 공기업이 추진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세부 추진방향

가. 화해·협력기

북한은 외화난, 식량난, 에너지난 등 3대 경제난으로 인하여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남북한간 통신 교류·협력의 확대도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남북한간 경제교류 확대 추세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화해·협력기의 남북한간 통신분야 교류·협력은 남북 통신교류의 접촉점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한의 경제협력 사업자가 북한측과 경제협력사업을 상담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통신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남북한간 통신교류의 기본원칙에 따라 판문점을 경유한 통신소통 루트를 사용하도록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경수로 지원사업 형식의 소통루트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 시점의 남북한간 통신소통 루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판문점을 경유하는 경우와 경수로 사업의 경우와 같이 평양의 국제관문국을

사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로 대별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판문점을 경유한 소통루트가 평양에 연결되면 남한과 북한내 지역간 전화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북한이 통신의 확산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와 같이 남한과 북한간 직통회선을 설치하는 것을 아직도 꺼려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간 통신소통은 당분간은 제3국을 경유한 간접소통루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전용회선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민간기업의 경협사안별 부대사업으로서의 통신교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화해·협력기 대북 통신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두 지점간(point-to-point) 전용회선을 연결하는 접촉점을 확대하게 될 것이며, 북한내 특정지역과의 통신회선 연결범위는 가능한 한 전용회선 수준을 넘어선 지역교환망 접속의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기간의 북한지역 통신사업에 대한 참여는 나진·선봉지대 등 특정지역의 통신망 현대화사업 및 북한의 낙후된 통신설비 생산사업의 현대화에 남한의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교류·협력 활성화기

교류·협력 활성화기에는 남북한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전용회선이 안정화된다는 가정하에 통신이용자 집단을 남북교역 관련기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 단체로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 통신수요가 증대될 경우, 공중통신망 접속

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전용회선의 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통신서비스의 멀티미디어화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공중통신망 접속은 우선적으로 기존의 서울~평양간 통신회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남북한간 통신방식은 기존의 남북한 양측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숫자의 접속점을 통하여 통신을 교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즉, 남북한간 통신수요가 증대될 경우에는 북한지역내의 접속점까지의 회선용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북한지역내 광케이블의 가설, 마이크로웨이브망의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 통신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증대될 경우에는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전송로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통신협력의 추진은 북한지역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남한이 자본·설비·기술면에서 참여하는 것과 남북한간을 연결하는 기간전송로를 건설하는 것 및 남한의 고도화된 기술을 북한 기술진을 교육함으로써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통신분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북한의 기술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대북한 통신협력은 북한의 개방지구, 개발지역, 관광지구 등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통신설비를 북한에 제공할 경우에는 북한 기술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류·협력 활성화기의 후반부에는 남북한간 통신소통을 제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인 바, 남북한간에 통신망을 연결하고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통신협정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26] 남북한간 통신협정의 체결은 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1992년 9월 17일 합의한 기본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제4조에서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통신교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토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둘째,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셋째,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넷째,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다섯째,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따라서 독일사례 연구가 시사하듯이 남북한의 체신부 당국자들과

---

26) 남북한간에 통신소통과 관련하여 기 합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1991년 12월 13일의 기본합의서에서는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전민주, "남북 통신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한국통신경영과 기술」, 1993. 8. pp. 44-52.

통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한간 통신위원회」(가칭)와 같은 남북한 공동기구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통신위원회」에서는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①통신소통의 기본원칙 수립, ②남북한 통신교류 및 협력사업의 범위 및 절차 수립, ③통신교류 및 협력 협정안 작성, ④실무단 구성을 통한 부문별 세부계획 협의 및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남북한의 통신회선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부터 시작하여, 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통신요금의 부과 및 정산방식, 남북한 주민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남북한간 통신협정에 명시될 사항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남북한간 통신요금의 부과 및 정산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전 남북한간 통신을 국내통신으로 간주할 것인지 또는 국제통신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간 통신을 국제통신으로 간주한다면 남북한간 통신요금의 정산방식으로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약정된 정산요금의 초과되는 부분을 발신측에서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정상요금·협정분배 양식을 채택하면 될 것이다. 반면, 남북한간 통신을 국내통신으로 간주한다면 원칙적으로 남북한간의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지역번호를 통합 및 재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교류·협력 제도화기

남북한간 통신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통신협정이 체결될 경우,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 통신현대화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며,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통신협정의 체결에 따라 통신망이 연결되고 남북한간 통신이 자유롭게 소통되게 되면, 남북통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통신수요에 대비하여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망의 확충과 개선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요인은 북한의 통신회선 설비 부족이다. 또한 북한의 통신망이 평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남한의 통신망과 접속되는 판문점에서부터 평양까지의 구간이 남북한간 통신소통에 있어 병목구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신 교류·협력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판문점에서 평양구간의 통신회선 용량을 증대시키되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관문국을 판문점에 가까운 개성에 설치하여 평양을 경유하지 않고도 북한지역의 여타 지역과 연결되도록 통신선로를 구성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장기적 계획은 북한지역의 통신망을 남한지역의 통신망 수준으로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대도시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양적인 확대와 병행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요 대도시간 통신망이 디지털화된 이후에는 중소도시간 통신망을 디지털화하여야 할 것이며, 시내통신망도 디지털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기간에는 남북한의 통신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통신시설이 남한의 통신시설과 상호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통신분야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종합 시스템장비이므로 특정기업의 장비가 운용되기 시작하면 그 후에도 계

속적으로 그 기업의 설비를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남한이 개발한 TDX 등 통신설비를 북한지역에 설치하여 북한이 운용하게 되면, 남한의 첨단기술을 북한이 배우게 되는 효과와 함께 남북한 통신통합시 단일화된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훨씬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반면 남한의 표준과 상이한 외국기업의 통신장비가 북한지역에 설치될 경우, 통신통합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며, 북한의 통신인력이 운용면에서도 또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V. 남북한 통신 교류·협력의 파급효과

1.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은 주민통제의 목적으로 통신정책을 수행하여 온 결과 북한 주민간 통신은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내 통신은 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남한과의 통신교류 재개문제에 대하여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항공관제협상에서 판문점을 경유한 통신루트 사용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수용한 바 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에서도 간접적이나마 현대측과의 통신소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통신소통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에는 남북한 통신교류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통신교류의 초기에는 통신교류의 확대가 남북한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따라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하여 통신소통이 확대되면, 경제교류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통신망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통신교류·협력의 확대가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경제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및 합작공장의 유치가 필수적인 바, 외국기업을 북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과의 통신교류·협력 확대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통신인프라를 개선해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남한의 기업과 북한소재 남한기업의 사무소간 통신소통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므로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의 확대는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남한과 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통신교류의 확대와 함께 북한과의 통신분야 협력사업을 상정할 수 있다. 통신분야에서의 남북한간 협력사업은 남한기술로 개발된 통신설비의 북한내 생산과 설치 및 통신망 운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남북한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단순한 전화기의 조립생산을 상정할 수 있으며, 남한기술로 개발된 전화기를 북한지역에서 조립생산하여 제3국에 수출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 통신분야의 협력사업은 임가공형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며, 북한측에 실질적 외화획득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한편 남한의 교환기를 북한에 설치하여 북한내 통신소통을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서 통신망을 운용하게 된다면, 북한의 통신인력을 남한의 기술진이 교육시킴으로써 남북한간 인적교류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의 증대는 북한측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게된다. 즉,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과 남한간 통신교류에서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향하는 통신의 양이 많을 것이므로,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으로서는 남한과의 통신루트 확대만으로서도 경제적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항공관제를 위한 통신루트 소통에 의해서 북한이 항공관제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남북한간 통신망 연결 및 확대는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에 따르는 신변안전보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남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북한지역에 진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통신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인프라 현대화라는 측면과 함께, 통신협력사업 자체가 북한인력의 고용창출효과 및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이 북한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으로는 남북한간 통신교류를 확대함으로 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생활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동서독 통일의 예에서 보더라도 방송·통신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방을 촉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에서 이러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내에서의 통신소통이 자유로와져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이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통신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난망하다. 동서독 통일과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도한 바 있는 북한은 내부체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현재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으므로 외부의 도움없이 북한내 주민들에 대한 보편적서비스를 단기간에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보편

적 서비스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만으로 북한이 개방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간접적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다만 남한과 북한이 통신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게 된다는 것은 통신과 관련한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남북한간 인적교류가 확대되는 것이며, 북한의 인력을 남한의 기술진이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남한 기술의 경쟁력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배우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의 확대가 순조로이 추진되어 북한이 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북한은 남한과의 통신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신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추진에 있어 북한이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에 있어 통신망의 연결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 및 북한의 국제적 통신망 발전은 북한의 경제개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사회의 전반적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체의 가동이 마비된 상태이나, 상대적으로 잘 훈련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통신과 같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북한 경제난을 타개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통신교류 확대는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이산가족간 통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 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북한이 체

제의 안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남한과의 통신소통을 꺼려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남한과의 통신소통 루트 재개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통신시설 현대화 및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산을 함축하게 되므로 북한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일 것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과의 통신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조급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신중하고 꾸준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분야의 교류·협력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서 남한내 통신사업자가 경제적 고려를 통해서 북한에 진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남한의 대북한 통신관련 협력사업이 대형화될 경우에는 남한내 사업자간에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남한내 사업자간 의견조율을 거쳐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결 론

북한은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식주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산주의체제의 속성상 주민들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신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인 통신분야에서의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하여서는 남북한간에 통신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통신을 외부세계와 연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반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의 확대로 인하여 북한의 통신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남한은 북한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신분야의 대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신분야의 교류·협력은 여타 분야의 단순한 경제교류·협력과 달리 대규모 투자가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통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국제기구로부터의 협조를 받는 방법에서부터 개별기업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금융지원을 하는 방법에 이르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정경분리원칙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통신분야에서 대규모 대북투자의 경우에는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되 재원조달을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통신체제는 이미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태인 반면, 북한은 중앙집중적 명령체계에 의하여 통신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남북한간 통신교류·협력을 현실적 차원에서 보다 자세히 연

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남한의 통신사업은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 및 조정하는 한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단계에 있으며, 통신사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남한의 통신사업자가 북한에 진출할 경우, 어느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한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와 통신사업자들이 대북 진출과 관련한 원칙을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마련하되, 통일이후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칙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간 통신 교류·협력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은 남한과의 통신교류 활성화 및 북한지역의 통신발전이 체제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한 통신교류·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북한이 통신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경제적인 실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의 경제를 주도하는 지도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인수·박성조·황인세. 「독일통신통합과 남북한의 통신통합」. 서울: 통신개발연구원, 1991.

사회과학출판사 편.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이명식. 「정보통신의 남북한 교류협력방안연구」, 경희대학교, 1996.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6.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993. 12.

통일원. 「동서독 조약·협정 자료집」, 1993.

한국전산원. 「동독지역의 정보통신기반구축 사례연구」. 서울: 한국전산원, 1995.

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 동향 분석」. 서울: 한국전산원, 1997.

DPRK. *Telecommunications Sector Appraisal(ITU Consultant)*, 1994. 9.

Peter I. Wilde. 「통일독일의 통신통합」. 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 1998.

TTA. 「세계의 정보통신지표」 1995. 12.

2. 논문

박철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신효식. "북한의 통신 및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전민주. "남북 통신분야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한국통신경영과기술」, 1993. 8. pp. 44-52.

제성호, "남북우편·통신교류 현황과 관련법제 개선방안", 「교류협력국 법제도세미나 자료」, 1997.

통일부, "보도 참고자료,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http://www.unikorea.go.kr/kr/A14/A1487.htm, 1999. 1. 6.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III) - '통신'", 『통일경제』, 1997. 8.

Chang-Ho Yoon and Young-Soo Lee, "Transform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North Korea",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ing Soci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9-10 November 1998.

UNDP, "Project for the Governm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88,

3. 기타

「내외통신」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硏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외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硏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 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硏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 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著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著 4,5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著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著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共著 발간예정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著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著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著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著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著 발간예정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著 5,0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著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 · 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著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 · 협력방안 연구
김규륜 著 3,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硏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硏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